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0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정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(안 제3조)
- 나.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- 다. 위원회 운영세칙(안 제5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: 2024. 7. 11.~7. 31.
    - 의견제출: 없음
 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7)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4. 8. 7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 75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
3.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
4.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소극행정 예방·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**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,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
3.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,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4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

5.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
6.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
7.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.

**제4조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경비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감사담당관 이혜정
연 락 처	02-3153-8173